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98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이주희 · 안도걸 · 김 현
문진석 · 조승래 · 송재봉
이훈기 · 정진욱 · 최기상
김기표 · 박민규 · 박정현
김선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판매광고나 상품 정보 제공에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거나 변조된 허위 후기를 활용한 과장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품의 표시·광고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 21조제1항, 제45조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3항제2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5호까지 및 제8호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7. (생략)</p> <p><u><신 설></u></p> <p>② (생략)</p> <p>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45조(과태료) ① · 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의6. (생략)</p> <p>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u>제5호</u>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p>	<p>제21조(금지행위) ①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u>」 제2조에 따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p> <p>②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45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1의6. (현행과 같음)</p> <p>2. -----<u>제5호</u>까지 및 제8호의-----</p>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